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대조표

현 행	개 정(안)
제3-6조(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통지)	**제3-6조(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등)**
①대외무역관리규정 제6-2-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은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 으로서 수입신고수리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수입 통관 후 원산지표시에 관한 의무를 준수 하도록 통지 할 수 있다.	①관세법 제227조, 제26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과 양도(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시에는 양수인에게 원산지표시 의무 및 관련자료 제출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에 의한 원산지표시 의무의 통지는 다음 각호 방법에 의한다.	②---------- 원산지표시 등 ----------.
1. 최초수입(수입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검사구분이 최초수입으로 표시된 경우)물품의 경우에는 「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통지서(별지 제6호 서식)」를 수입자(또는 신고인)에게 교부하고 의무이행 요구사항(별표 7)의 내용을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및 수입신고필증에 표시	1. 관세청장이 지정한 <별표12>의 물품의 경우에는 ----------.
2. 제1호의 최초수입 이외의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의무이행 요구사항(별표7)의 내용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	2.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----------

란에 스탬프로 표시(다만, 서류 없는 수입신고(P/L신고)의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)	----------
③ (신설)	③ 제2항제1호의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자 및 수입자로부터 양수하여 재양도한 자(중간 구매업자 등으로부터 재양수한 자 포함)는 해당물품을 양수한 자에게「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통지서(별지 제6호 서식) 사본을 교부하고, 양도후 2일 이내에 양수한 자의 상호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양도중량, 양도일자 등을 관세청 「수입물품 통관·유통 이력관리 시스템」에 접속하여 관련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.
④ (신설)	④ 제3항의 「수입물품 통관·유통 이력관리 시스템」입력은 「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(별지 제6-1호 서식)」에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⑤ (신설)	⑤제4항에 따라 수입자 및 양도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6-1호 서식을 제출받은 세관장은 관련내용을 관세청 「수입물품 통관·유통 이력관리 시스템」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.

<별표12> (고시 제3-6조제2항 관련)

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 통지 및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

1. 쇠고기 일부 부위

연번	부 위	품목번호	표준품명	비고
1	뇌	0206.10-0000 (식용설육, 냉장) 0206.29-9000 (식용설육, 냉동)	Brain	
2	눈		Eye	
3	머리뼈		Skull	
4	척수		Spinal Cord	
5	등배신경절		Doral Root Ganglia	
6	척주		Vertebral Column	
7	편도		Tonsil	
8	회장원위부	0504.00.1010 (소의 장)	-	distal ileum

2. 쇠고기 일부부위 포함가능 부위

연번	부 위	품목번호	표준품명	비고
1	소머리	0206.10-0000 (식용설육, 냉장) 0206.29-9000 (식용설육, 냉동)	-	
2	혀	0206.10-0000 (식용설육, 냉장) 0206.21-0000 (소의 혀, 냉동)	Tongue Frozen Bovine tongues	
3	내장	0504.00.1010 (소의 장)	-	guts
4	등뼈(척추)	0206.10-0000 (식용설육, 냉장) 0206.29-9000 (식용설육, 냉동)	Vertebrate	분리통관 (0202.20-0000)